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8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호대, 권수정, 채인묵,
이태성, 유 용, 권영희,
이준형, 김제리, 최정순,
이정인 의원(10명)

1. 제안이유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생들은 정규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나 각 지자체 장학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고등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장학지급 및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장학재단 장학지급 및 선정대상에 직업교육기관 학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의 각호와 같다.</u></p> <p>1. “학생”이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p> <p>2. (생략)</p> | <p>제2조(용어의 정의) ----- ----- 다음 각 호-----.</p> <p>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p> <p>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p> <p>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p> <p>2. (현행과 같음)</p> |